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92호 2019. 8. 14.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19-180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북부권).....3
- 정선군 고시 제2019-182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중부권).....9
- 정선군 고시 제2019-183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남부권).....12
- 정선군 고시 제2019-184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17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19-824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폐지)(안) 주민 공람·공고.....18

- 정선군 공고 제2019-846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주민
공람·공고.....19
- 정선군 공고 제2019-867호 정선군 반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
- 정선군 공고 제2019-868호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34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19-180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복부권)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8월 9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우선해제시설)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여량면, 북평면, 임계면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도로 총괄표(금회 변경사항)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30	6,808	56,989	3	742	7,317	21	4,590	40,507	6	1,476	9,165
	변경	10	2,212	19,811	-	-	-	8	1,577	16,193	2	635	3,618
중로	기정	1	461	6,950	-	-	-	1	461	6,950	-	-	-
	변경	1	461	6,925	-	-	-	1	461	6,925	-	-	-
소로	기정	29	6,347	50,039	3	742	7,317	20	4,129	33,557	6	1,476	9,165
	변경	9	1,751	12,886	-	-	-	7	1,116	9,268	2	635	3,618

※ 변경 10개소, 폐지 20개소

2) 여량도시지역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8	8	국지 도로	117	소로 2-13 여량리 166-5전	소로 2-10 여량리 161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00호(03.4.28)	
변경	소로	2	8	8	국지 도로	110	소로 2-13 여량리 166-5전	소로 2-10 여량리 161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00호(03.4.28)	도로 모퉁이변경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135	중로 2-1 여량리 130-3대	소로 2-10 여량리 152-1답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63호(83.4.28)	
변경	소로	2	9	8	국지 도로	233	중로 2-1 여량리 130-3대	소로 3-7 여량리 154-5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63호(83.4.28)	
폐지	소로	2	10	8	국지 도로	495	중로 2-1 여량리 130-6도	소로 2-13 여량리 770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22호(97.2.6)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304	소로 1-1 여량리 170-1구	소로 2-10 여량리 770-2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22호(97.2.6)	
변경	소로	2	13	8	국지 도로	304	소로 1-1 여량리 170-1구	소로 2-10 여량리 770-2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22호(97.2.6)	도로 모퉁이변경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315	소로 1-1 여량리 172-1전	소로 2-10 여량리 154-3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22호(97.2.6)	
변경	소로	3	7	6	국지 도로	315	소로 1-1 여량리 172-1전	소로 2-10 여량리 154-3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22호(97.2.6)	도로 모퉁이변경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소로 2-8	소로 2-8	◦도로변경 - L=117m→110m, 감)7m	◦ 소로2-10호선 폐지에 따른 종점부 도로 연장 및 모퉁이 변경
변경	소로 2-9	소로 2-9	◦도로변경 - L=135m→233m, 증) 98m	◦ 소로2-10호선 폐지에 따른 단절 된 도로 기능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소로2-9호선의 선형 및 연장 변경
폐지	소로 2-10	소로 2-10	◦도로폐지 - B=8m, L=495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설 치여건 및 현황을 고려하여 도로 폐지
변경	소로 2-13	소로 2-13	◦도로모퉁이 변경	◦ 소로2-10호선 폐지에 따른 도로모퉁이 변경
변경	소로 3-7	소로 3-7	◦도로모퉁이 변경	◦ 소로2-10호선 폐지에 따른 도로모퉁이 변경

3) 북평도시지역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6	15	보조 간선 도로	461	중로1-1 북평리811-2답	중로2-1 북평리764전	일반 도로	두부 공장	정선군고시 2003-42호 (2003.05.09.)	
변경	중로	2	6	15	보조 간선 도로	461	중로1-1 북평리811-2답	중로2-1 북평리764전	일반 도로	두부 공장	정선군고시 2003-42호 (2003.05.09.)	도로 모퉁이 변경
폐지	소로	1	3	10	집산 도로	116	중로 3-2 북평리 220-4전	소로 1-2 북평리 124-4답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67호(86.6.7)	
폐지	소로	1	4	10	집산 도로	506	중로 2-2 북평리 665-3전	중로 2-1 북평리 765-1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67호(86.6.7)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1	5	10	집산 도로	120	중로 2-2 북평리 665-7전	중로 2-4 북평리 686-13답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67호(86.6.7)	
폐지	소로	2	1	8	국지 도로	360	중로 3-4 북평리 328-7임	중로 3-4 북평리 323-1전	일반 도로	북평5리 새마을회 관	강원도고시 67호(86.6.7)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111	중로 3-4 북평리 328-14대	소로 3-1 북평리 322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67호(86.6.7)	
변경	소로	2	2	8	국지 도로	111	중로 3-4 북평리 328-14대	소로 3-1 북평리 322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67호(86.6.7)	도로 모퉁이 변경
폐지	소로	2	4	8	국지 도로	84	중로 3-4 북평리 319-25도	소로 3-1 북평리 산139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67호(86.6.7)	
폐지	소로	2	5	8	국지 도로	246	중로 3-4 북평리 317-16전	소로 2-1 북평리 328-7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67호(86.6.7)	
폐지	소로	2	7	8	국지 도로	188	소로 1-3 북평리 220-1전	소로 1-2 북평리 124-1답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67호(86.6.7)	
폐지	소로	2	8	8	국지 도로	215	중로 1-1 북평리 149-59전	소로 1-2 북평리 124-4답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67호(86.6.7)	
폐지	소로	2	9	8	국지 도로	182	중로 2-1 북평리 210-1전	소로 1-2 북평리 225-2답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67호(86.6.7)	
폐지	소로	2	13	8	국지 도로	174	중로 2-1 북평리 204-25전	소로 2-9 북평리 221-1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67호(86.6.7)	
폐지	소로	2	15	8	국지 도로	146	중로 2-1 북평리 204-38전	중로 1-1 북평리 179-86제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67호(86.6.7)	
폐지	소로	2	18	8	국지 도로	131	중로 2-1 북평리 694-2답	소로 2-19 북평리 704-1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67호(86.6.7)	
폐지	소로	2	20	8	국지 도로	62	중로 3-1 북평리 192-6대	소로 2-15 북평리 206-1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67호(86.6.7)	
기정	소로	2	21	8	국지 도로	162	중로 2-1 북평리 761-1전	소로 1-4 북평리 621-5철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67호(86.6.7)	
변경	소로	2	21	8	국지 도로	147	중로 2-1 북평리 761-1전	중로 3-3 북평리 619-11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67호(86.6.7)	
기정	소로	2	22	8	국지 도로	170	중로 2-1 북평리 755-2전	소로 1-4 북평리 653-3답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67호(86.6.7)	
변경	소로	2	22	8	국지 도로	110	중로 2-1 북평리 755-2전	중로 3-3 북평리 651-1답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67호(86.6.7)	
폐지	소로	2	25	8	국지 도로	268	중로2-1 북평리755-3전	중로 1-1 북평리731-2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67호(86.6.7)	
폐지	소로	2	31	8	국지 도로	360	중로 1-2 북평리 189-15임	소로 2-16 북평리 121답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67호(86.6.7)	
폐지	소로	3	14	6	국지 도로	35	소로 3-17 장열리 262-3전	소로 3-18 장열리 426대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67호(86.6.7)	
폐지	소로	3	15	6	국지 도로	52	소로 1-6 장열리 469답	소로 3-18 장열리 418대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67호(86.6.7)	
폐지	소로	3	17	6	국지 도로	352	소로 2-29 장열리 366도	소로 3-18 장열리 247-32학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67호(86.6.7)	
기정	소로	3	18	6	국지 도로	371	소로 3-17 장열리 448대	소로 1-6 장열리 366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67호(86.6.7)	
변경	소로	3	18	5-6	국지 도로	320	소로 2-29 장열리 453답	소로 1-1 장열리 369답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67호(86.6.7)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중로 2-6	중로 2-6	◦도로모통이 변경	◦ 소로1-4호선 폐지에 따른 도로모통이 변경
폐지	소로 1-3	-	◦도로폐지 - B=10m, L=116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1-4	-	◦도로폐지 - B=10m, L=506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1-5	-	◦도로폐지 - B=10m, L=120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2-1	-	◦도로폐지 - B=10m, L=360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변경	소로 2-2	소로 2-2	◦도로모통이 변경	◦ 소로2-1호선 폐지에 따른 도로모통이 변경
폐지	소로 2-4	-	◦도로폐지 - B=8m, L=84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2-5	-	◦도로폐지 - B=8m, L=246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2-7	-	◦도로폐지 - B=8m, L=188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2-8	-	◦도로폐지 - B=8m, L=215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2-9	-	◦도로폐지 - B=8m, L=182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2-13	-	◦도로폐지 - B=8m, L=174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2-15	-	◦도로폐지 - B=8m, L=146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2-18	-	◦도로폐지 - B=8m, L=131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2-20	-	◦도로폐지 - B=8m, L=62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변경	소로 2-21	소로 2-21	◦도로변경 - L=162m→147m, 감) 15m	◦ 소로1-4호선 폐지에 따라 도로개설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 현황도로에 맞추어 연장 축소
변경	소로 2-22	소로 2-22	◦도로변경 - L=170m→110m, 감) 60m	◦ 소로1-4호선 폐지에 따른 단절 된 도로 기능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소로2-22호선의 연장 축소
폐지	소로 2-25	-	◦도로폐지 - B=8m, L=268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2-31	-	◦도로폐지 - B=8m, L=360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3-14	-	◦도로폐지 - B=6m, L=35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3-15	-	◦도로폐지 - B=6m, L=52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3-17	-	◦도로폐지 - B=6m, L=352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변경	소로 3-18	소로 3-18	◦도로변경 - B=6m→5-6m L=371m→320m, 감) 51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라 현황 및 주변 가로망을 고려하여 선형 변경 및 연장 축소

4) 임계도시지역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2	8	국지 도로	219	중로 2-3 송계리 691-1답	소로 2-14 송계리 666-2전	일반 도로	3호 어린이공원	강원도고시 112호(87.9.9)	
변경	소로	2	12	8	국지 도로	101	중로 2-3 송계리 691-1답	소로 2-13 송계리 671답	일반 도로	3호 어린이공원	강원도고시 112호(87.9.9)	
폐지	소로	3	9	6	국지 도로	351	중로 2-1 송계리 640-7도	중로 2-1 송계리 976구	일반 도로	임계농협	강원도고시 112호(87.9.9)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소로 2-12	소로 2-12	◦도로변경 - L=219m→101m, 감) 108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라 현황을 고려하여 도로 연장 축소
폐지	소로 3-9	소로 3-9	◦도로폐지 - B=6m, L=351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군 고시 제2019-182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중부권)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8월 9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우선해제시설)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도로 총괄표(금회 변경사항)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20	3,609	29,886	3	699	7,018	10	1,689	16,119	7	1,221	6,749
	변경	6	978	9,734	-	-	-	2	626	7,770	4	352	1,964
중로	기정	1	370	5,690	-	-	-	1	370	5,690	-	-	-
	변경	1	380	5,831	-	-	-	1	380	5,831	-	-	-
소로	기정	19	3,239	24,196	3	699	7,018	9	1,319	10,429	7	1,221	6,749
	변경	5	598	3,903	-	-	-	1	246	1,939	4	352	1,964

※ 변경 6개소, 폐지 14개소

2) 정선도시지역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7	15	보조간 선도로	370	중로 1-3 애산리 604전	소로 1-15 애산리 611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5호(92.2.13)	
변경	중로	2	7	15	보조간 선도로	380	중로 1-3 애산리 604-3제	운동장1 애산리 768제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5호(92.2.13)	
폐지	소로	1	13	10	집산 도로	191	중로 1-2 애산리 741-10도	소로 2-42 애산리 593전	일반 도로	늘봄공원	강원도고시 15호(92.2.13)	
폐지	소로	1	14	10	집산 도로	202	중로 1-2 애산리 736-1전	소로 2-42 애산리 659-2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5호(92.2.13)	
폐지	소로	1	15	10	집산 도로	306	애산리 498-1입	소로 2-50 애산리 627-11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5호(92.2.13)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139	중2-7 애산리 603-4도	애산리 603-4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34호(98.07.11)	
변경	소로	3	54	5	국지 도로	85	중2-7 애산리 603-4도	애산리 603-4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34호(98.07.11)	
폐지	소로	2	12	8	국지 도로	239	소로 3-44 애산리 727-1도	소로 1-14 애산리 719-3전	일반 도로	-	정선군고시 41호(03.5.9)	
폐지	소로	2	36	8	국지 도로	55	중로 3-2 북설리 780-16전	북설리 782-1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34호(85.12.14)	
폐지	소로	2	37	8	국지 도로	50	중로 3-2 북설리 601-8대	소로 3-36 북설리 601-3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5호(92.2.13)	
기정	소로	2	42	8	국지 도로	264	중로 2-6 애산리 579-2대	소로 1-14 애산리 659-2전	일반 도로	늘봄공원	강원도고시 15호(92.2.13)	
변경	소로	2	42	8	국지 도로	246	중로 2-6 애산리 579-2대	애산리 597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5호(92.2.13)	
폐지	소로	2	48	8	국지 도로	210	중로 2-7 애산리 639-1전	소로 3-37 애산리 648-4전	일반 도로	-	정선군고시 41호(03.5.9)	
폐지	소로	2	49	8	국지 도로	130	소로 1-15 애산리 628전	중로 2-48 애산리 646전	일반 도로	-	정선군고시 41호(03.5.9)	
폐지	소로	2	50	8	국지 도로	85	소로 1-15 애산리 627-11전	소로 3-37 애산리 652전	일반 도로	-	정선군고시 41호(03.5.9)	
폐지	소로	2	52	8	국지 도로	147	애산리 652전	애산리 655-1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5호(92.2.13)	
폐지	소로	3	18	4	국지 도로	66	소로 2-35 봉양리 361-1제	소로 2-18 봉양리 143-1대	일반 도로	조양연립	강원도고시 134호(85.12.14)	
폐지	소로	3	28	6	국지 도로	177	중로 1-2 북설리 755도	중로 3-8 북설리 620-1전	일반 도로	아세아 정비공업사	강원도고시 134호(85.12.14)	
폐지	소로	3	38	6	국지 도로	44	소로 2-9 애산리 603-4도	소로 3-39 애산리 599-27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34호(98.7.11)	
기정	소로	3	39	6	국지 도로	223	중로 2-7 애산리 599-18전	애산리 658-2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34호(98.7.11)	
변경	소로	3	39	4	국지 도로	61	중로 2-7 애산리 599-18전	소로 3-42 애산리 599-23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34호(98.7.11)	
기정	소로	3	42	6	국지 도로	66	소로 2-9 애산리 599-50대	소로 3-39 애산리 599-46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5호(92.2.13)	
변경	소로	3	42	6	국지 도로	70	소로 3-54 애산리 599-30대	소로 3-39 애산리 599-8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5호(92.2.13)	
기정	소로	3	43	6	국지 도로	246	소로 2-30 북설리 829구	소로 3-31 북설리 762-4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5호(92.2.13)	
변경	소로	3	43	6	국지 도로	136	소로 2-31 북설리 829-6제	소로 3-31 북설리 762-4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5호(92.2.13)	
폐지	소로	3	44	6	국지 도로	399	소로 2-42 애산리 592대	소로 1-14 애산리 736-1전	일반 도로	늘봄공원	강원도고시 15호(92.2.13)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중로 2-7	중로 2-7	◦도로변경 - L=370m→380m, 증)10m	◦ 소로1-15호선 폐지에 따른 단절 된 도로 기능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중로2-7호선의 연장 변경
폐지	소로 1-13	소로 1-13	◦도로폐지 - B=10m, L=191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1-14	소로 1-14	◦도로폐지 - B=10m, L=202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1-15	소로 1-15	◦도로폐지 - B=10m, L=306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변경	소로 2-9	소로 3-54	◦도로변경 - B=8m→5m 감)3m - L=139m→85m 감)54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라 현황도로에 맞추어 폭원 및 연장 축소
폐지	소로 2-12	소로 2-12	◦도로폐지 - B=8m, L=239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설치여건 및 현황을 고려하여 도로 폐지
폐지	소로 2-36	소로 2-36	◦도로폐지 - B=8m, L=55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2-37	소로 2-37	◦도로폐지 - B=8m, L=50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변경	소로 2-42	소로 2-42	◦도로변경 - L=264m→246m, 감)18m	◦ 소로1-14호선 폐지에 따라 종점부 일부 변경
폐지	소로 2-48	소로 2-48	◦도로폐지 - B=8m, L=210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설치여건 및 현황을 고려하여 도로 폐지
폐지	소로 2-49	소로 2-49	◦도로폐지 - B=8m, L=130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설치여건 및 현황을 고려하여 도로 폐지
폐지	소로 2-50	소로 2-50	◦도로폐지 - B=8m, L=85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설치여건 및 현황을 고려하여 도로 폐지
폐지	소로 2-52	소로 2-52	◦도로폐지 - B=8m, L=147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3-18	소로 3-18	◦도로폐지 - B=6m, L=66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3-28	소로 3-28	◦도로폐지 - B=6m, L=177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3-38	소로 3-38	◦도로폐지 - B=6m, L=44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변경	소로 3-39	소로 3-39	◦도로변경 - B=6m→4m 감)2m - L=223m→61m 감)162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라 현황도로에 맞추어 폭원 및 연장 축소
변경	소로 3-42	소로 3-42	◦도로변경 - B=6m, L=66m→70m 증)4m	◦ 기 결정되어 있던 소로3-42호선을 현황도로에 맞추어 선형을 변경
변경	소로 3-43	소로 3-43	◦도로변경 - B=6m, L=246m→136m 감)110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라 도로 연장 축소
폐지	소로 3-44	소로 3-44	◦도로폐지 - B=6m, L=399m	◦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설치여건 및 현황을 고려하여 도로 폐지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군 고시 제2019-183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남부권)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8월 9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우선해제시설)에 따라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통한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고한·사북읍, 신동읍, 남면(증산)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1) 도로 총괄표(금회 변경사항)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기정	17	3,289	28,360	3	229	2,361	4	1,236	12,652	10	1,824	13,347
	변경	2	454	4,333	-	-	-	-	-	-	2	454	4,333
중로	기정	1	187	2,652	-	-	-	-	-	-	1	187	2,652
	변경	1	187	2,647	-	-	-	-	-	-	1	187	2,647
소로	기정	16	3,102	25,708	3	229	2,361	4	1,236	12,652	9	1,637	10,695
	변경	1	267	1,686	-	-	-	-	-	-	1	267	1,686

※ 변경 2개소, 폐지 15개소

2) 고한·사북도시지역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3	14	국지 도로	187	사북리 354-8대	사북리 354-11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26호(79.2.8)	
변경	중로	3	13	14	국지 도로	187	사북리 354-8대	사북리 354-11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26호(79.2.8)	도로 모퉁이변경
폐지	소로	1	4	10	국지 도로	38	사북리 357대	중로 3-12 사북리 356-241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26호(79.2.8)	
폐지	소로	1	14	10	국지 도로	33	고한리 131-1대	고한리 산89-1천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34호(85.12.19)	
폐지	소로	3	7	6	국지 도로	323	중로 1-3 고한리 산2-175임	중로 1-3 고한리 산245-2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26호(79.2.8)	
폐지	소로	3	10	6	국지 도로	63	중로 1-3 고한리 산2-175임	고한리 373-104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26호(79.2.8)	
폐지	소로	3	25	6	국지 도로	52	중로 2-1 고한리 산274-5임	고한리 145-15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34호(85.12.19)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중로 3-13	중로 3-13	◦면적 축소 - 2,652㎡ → 2,647㎡ 감) 5㎡	◦ 소로1-4호선 폐지에 따른 중로3-13호선 가각부 조정
폐지	소로 1-4	-	◦도로폐지 - B=10m, L=38m	◦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1-14	-	◦도로폐지 - B=10m, L=33m	◦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3-7	-	◦도로폐지 - B=6m, L=323m	◦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3-10	-	◦도로폐지 - B=6m, L=63m	◦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3-25	-	◦도로폐지 - B=6m, L=52m	◦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3) 신동도시지역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1	8	국지 도로	321	중로 1-1 예미리 653-6도	중로 1-1 예미리 305-4	일반 도로	-	1977.1.31	
폐지	소로	2	5	8	국지 도로	378	소로 1-3 예미리 731-18대	소로 1-1 예미리 236-5철	일반 도로	-	1974.4.9	
폐지	소로	2	6	8	국지 도로	232	중로 2-1 예미리 777-3도	소로 1-2 예미리 813-1도	일반 도로	-	1974.4.9	
폐지	소로	2	13	8	국지 도로	605	중로 2-2 예미리 132-2도	중로 2-2 예미리 119-2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34호(85.12.19)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259	예미리 212-1답	예미리 204-1철	일반 도로	-	정선군고시 27호(02.5.16)	
변경	소로	3	4	6	국지 도로	267	예미리 212-1답	예미리 204-1철	일반 도로	-	정선군고시 27호(02.5.16)	도로 연장변경
폐지	소로	3	11	6	국지 도로	208	중로 3-2 예미리 892천	소로 1-1 예미리 809-16도	일반 도로	-	1974.4.9	
폐지	소로	3	13	6	국지 도로	244	중로 3-3 예미리 216-46철	중로 3-3 예미리 244-1도	일반 도로	-	1979.1.30	
폐지	소로	3	25	6	국지 도로	51	예미리 307-1도	예미리 302전	일반 도로	-	1974.4.9	
폐지	소로	3	26	6	국지 도로	370	소로 2-8 예미리 410-5도	예미리 395-6잡	일반 도로	-	정선군고시 134호(85.12.19)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소로 2-1	-	◦도로폐지 - B=8m, L=321m	◦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2-5	-	◦도로폐지 - B=8m, L=378m	◦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2-6	-	◦도로폐지 - B=8m, L=232m	◦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2-13	-	◦도로폐지 - B=8m, L=605m	◦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변경	소로 3-4	소로 3-4	◦노선연장 - L=259m → 267m (증 8m)	◦ 소로2-5호선 폐지에 따른 단절된 도로 기능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소로3-4호선의 연장 변경
폐지	소로 3-11	-	◦도로폐지 - B=6m, L=208m	◦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3-13	-	◦도로폐지 - B=6m, L=244m	◦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3-25	-	◦도로폐지 - B=6m, L=51m	◦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3-26	-	◦도로폐지 - B=6m, L=370m	◦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4) 남면(중산)도시지역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1	4	10	국지 도로	158	중로 2-1 무릉리 434-16도	중로 2-2 무릉리 821-2구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108호(91.9.6)	
폐지	소로	3	17	6	국지 도로	67	소로 2-13 무릉리 597-3도	무릉리 594-17도	일반 도로	-	강원도고시 52호(87.5.1)	

○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소로 1-4	-	◦도로폐지 - B=10m, L=158m	◦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폐지	소로 3-17	-	◦도로폐지 - B=6m, L=67m	◦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로서 지방의회 해제권고(2018.12.04)에 따른 시설 폐지

라. 정선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군 고시 제2019-184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변경 결정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년 8월 9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 취지 : 정선읍 북설리 지역 내 주차난에 따른 주민 및 내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 및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차장 시설을 결정(변경)

나.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교통시설

(1)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3	주차장	정선읍 북설리 616-12 일원	871	증)542	1,413	정선군고시 제2019-36호	

■ 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	주차장	◦ 변경 - A:871㎡→1,413㎡ (증)542㎡	◦ 북설리 인근의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난 등으로 인해 주민 및 내방객들의 교통환경 불편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정주여건 및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주차장 시설 확장

다. 군관리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19-824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폐지)(안) 주민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폐지)(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7일

정 선 군 수

1. 사업 개요

가. 건명: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폐지)(안)

나. 위치: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98-1번지 일원

다. 면적:7,206㎡(폐지)

라. 주요내용:정선군 수도정비기본계획상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기존 노후된 지방상수도 정수시설의 폐지 계획에 따라 수도시설 폐지인가(강원도고시 제2014-463호, 2014. 10. 31))완료된 지방상수도시설(북일정수장)에 대한 군계획시설을 해제코자함

2. 공람목적: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결정(폐지)(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3.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결정(폐지)(안) 도서:실음 생략(공람장소 비치)
4.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정선군청 도시과, 사북읍사무소
5. 열람기간: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2019. 8. 07. ~ 2019. 8. 22.)
6.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열람 기간 내 정선군청 도시과 및 사북읍사무소에 서면 제출
7. 기타사항:확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열람기간 내에 공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청 도시과 (033-560-2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9-846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주민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12일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2. 위 치: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337-1 일원
3.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광장)결정(변경)(안) 도서: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4.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정선군 도시과, 사북읍사무소
5. 열람기간: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2019. 8. 12 ~ 2019. 8. 27)
6.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열람 기간 내 정선군 도시과 및 사북읍사무소에 서면 제출
7. 기타사항:문의사항은 정선군 도시과 (033-560-2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선군 공고 제2019-867호

정선군 반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선군 반운영 규칙안」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9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가.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리 조정으로 반 신설 및 조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행정리 및 반 조정 (정선읍 애산2리 1개반 신설) (규칙안 별표)

나. 행정리 및 반 조정 (고한읍 고한6리 반 조정) (규칙안 별표)

다. 행정리 및 반 조정 (정선읍 고한20리 4개반 신설) (규칙안 별표)

➤ 조정 총괄 내역

구 분	현 재		조정내용						증·감		조정 후		비고
			신설		통합		폐지						
	리	반	리	반	리	반	리	반	리	반	리	반	
합 계	183	966							증0	증5	183	971	
정선읍	35	233		1						1	35	234	
고한읍	20	113		4						4	20	117	
사북읍	13	119									13	119	
신동읍	26	132									26	132	
화암면	13	49									13	49	
남 면	15	82									15	82	
여량면	14	65									14	65	
북평면	15	67									15	67	
임계면	32	106									32	106	

➤ 조정 세부 내역

- 행정반 : 정선읍 애산2리 1개반 신설

조 정 전				조 정 후			
리	반명	가구	인구	리	반명	가구	인구
애산2리	1~13	284	641	애산2리	1~13	284	641
애산2리				애산2리	14	284	641

➤ 지번 조서(애산2리)

지번별	지목	지적(m^2)	비고
계		1695.26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201호)	대	56.87	1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202호)	대	56.87	1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203호)	대	64.22	1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204호)	대	64.22	1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301호)	대	56.87	1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302호)	대	56.87	1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303호)	대	64.22	1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304호)	대	64.22	1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401호)	대	56.87	1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402호)	대	56.87	1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403호)	대	64.22	1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404호)	대	64.22	1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501호)	대	56.87	1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502호)	대	56.87	1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503호)	대	64.22	1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504호)	대	64.22	1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601호)	대	56.87	1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602호)	대	56.87	1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603호)	대	64.22	1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604호)	대	64.22	1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701호)	대	56.87	1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702호)	대	56.87	1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703호)	대	64.22	1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704호)	대	64.22	14반

➤ 지번 조서(애산2리)

지번별	지목	지적(m^2)	비고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801호)	대	56.87	1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802호)	대	56.87	1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803호)	대	64.22	14반
정선읍 애산리 432-501 (아강아리채, 2동 804호)	대	64.22	14반

➤ 조정 세부 내역

- 행정반 : 고한읍 고한6리 반 조정

조 정 전				조 정 후			
리	반명	가구	인구	리	반명	가구	인구
고한6리	1~8	118		고한6리	1~8	356	

➤ 지번 조서(고한6리)

지번별	지목	지적(m^2)	비고
계		111,030	
고한읍 고한리 440 (파인애플유 101동)	대	12,276.7	1반
고한읍 고한리 440 (파인애플유 102동)	대	12,267.7	2반
고한읍 고한리 440 (파인애플유 103동)	대	12,267.7	3반
고한읍 고한리 440 (파인애플유 104동)	대	12,267.7	4반
고한읍 고한리 284	대	216	4반
고한읍 고한리 285	대	130	4반
고한읍 고한리 285-1	대	90	4반
고한읍 고한리 285-2	대	60	4반
고한읍 고한리 285-3	대	130	4반
고한읍 고한리 285-4	대	142	4반
고한읍 고한리 285-4	대	84	4반
고한읍 고한리 285-6	대	102	4반
고한읍 고한리 285-7	대	116	4반
고한읍 고한리 285-8	대	178	4반
고한읍 고한리 286	대	274	4반
고한읍 고한리 286-1	대	108	4반
고한읍 고한리 286-2	대	97	4반
고한읍 고한리 286-3	대	60	4반
고한읍 고한리 286-4	대	96	4반
고한읍 고한리 286-5	대	90	4반
고한읍 고한리 286-6	대	60	4반
고한읍 고한리 286-7	대	118	4반
고한읍 고한리 286-8	대	60	4반
고한읍 고한리 286-9	대	72	4반

➤ 지번 조서(고한6리)

지번별	지목	지적(m^2)	비고
고한읍 고한리 286-10	대	25	4반
고한읍 고한리 286-11	대	84	4반
고한읍 고한리 286-12	대	314	4반
고한읍 고한리 286-13	대	60	4반
고한읍 고한리 286-14	대	12	4반
고한읍 고한리 286-15	대	130	4반
고한읍 고한리 286-16	대	248	4반
고한읍 고한리 286-17	대	48	4반
고한읍 고한리 286-18	대	60	4반
고한읍 고한리 286-19	대	108	4반
고한읍 고한리 286-20	대	108	4반
고한읍 고한리 286-21	대	320	4반
고한읍 고한리 286-22	대	178	4반
고한읍 고한리 286-23	대	96	4반
고한읍 고한리 286-24	대	96	4반
고한읍 고한리 286-25	대	164	4반
고한읍 고한리 286-26	대	72	4반
고한읍 고한리 286-27	대	154	4반
고한읍 고한리 286-28	대	84	4반
고한읍 고한리 286-29	대	226	4반
고한읍 고한리 286-30	대	492	4반
고한읍 고한리 286-31	대	190	4반
고한읍 고한리 286-32	대	166	4반
고한읍 고한리 286-33	대	79	4반
고한읍 고한리 286-34	대	118	4반
고한읍 고한리 286-35	대	142	4반
고한읍 고한리 440 (파인애플 105동)	대	12,276.7	5반
고한읍 고한리 44-5	철도	5,595	6반
고한읍 고한리 44-2	철도	533	6반
고한읍 고한리 산1-10	철도	3,588	6반
고한읍 고한리 산1-18	철도	9,818	6반
고한읍 고한리 274-230	대	101	6반
고한읍 고한리 274-153	대	370	6반

➤ 지번 조서(고한6리)

지번별	지목	지적(m^2)	비고
고한읍 고한리 274-229	대	12	6반
고한읍 고한리 36-52	대	74	6반
고한읍 고한리 274-247	대	148	6반
고한읍 고한리 36-32	대	507	6반
고한읍 고한리 36-31	대	537	6반
고한읍 고한리 36-30	대	120	6반
고한읍 고한리 36	대	496	6반
고한읍 고한리 36-53	대	177	6반
고한읍 고한리 36-22	대	344	6반
고한읍 고한리 36-54	대	206	6반
고한읍 고한리 36-23	대	305	6반
고한읍 고한리 36-55	대	236	6반
고한읍 고한리 36-33	대	801	7반
고한읍 고한리 36-34	대	916	7반
고한읍 고한리 36-24	대	276	7반
고한읍 고한리 36-56	대	255	7반
고한읍 고한리 36-25	대	266	7반
고한읍 고한리 36-57	대	276	7반
고한읍 고한리 36-26	대	272	7반
고한읍 고한리 36-58	대	265	7반
고한읍 고한리 36-63	대	332	8반
고한읍 고한리 36-27	대	271	8반
고한읍 고한리 36-64	대	354	8반
고한읍 고한리 36-28	대	197	8반
고한읍 고한리 36-29	대	550	8반
고한읍 고한리 36-35	대	378	8반
고한읍 고한리 36-49	대	476	8반
고한읍 고한리 36-36	대	378	8반
고한읍 고한리 36-50	대	480	8반
고한읍 고한리 36-40	대	383	8반
고한읍 고한리 36-41	대	389	8반
고한읍 고한리 36-42	대	394	8반
고한읍 고한리 36-37	대	368	8반

➤ 지번 조서(고한6리)

지번별	지목	지적(m^2)	비고
고한읍 고한리 36-51	대	480	8반
고한읍 고한리 36-38	대	540	8반
고한읍 고한리 36-60	대	291	8반
고한읍 고한리 36-39	대	366	8반
고한읍 고한리 36-43	대	483	8반
고한읍 고한리 36-44	대	657	8반
고한읍 고한리 36-65	대	141	8반
고한읍 고한리 36-61	대	193	8반
고한읍 고한리 36-62	대	49	8반
고한읍 고한리 36-46	대	970	8반
고한읍 고한리 36-47	대	2,731	8반
고한읍 고한리 산1-11	철도	2,083	8반
고한읍 고한리 산312-2	철도	808	8반
고한읍 고한리 산310-1	철도	2,380	8반

➤ 조정 세부 내역

- 행정반 : 고한읍 고한20리 4개반 신설

조 정 전				조 정 후			
리	반명	가구	인구	리	반명	가구	인구
고한20리	1~8	241		고한20리	1~8	241	
고한20리				고한20리	9~12	150	

➤ 지번 조서(고한20리)

지번별	지목	지적(m^2)	비고
계		13215.78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201호)	대	73.17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202호)	대	73.17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203호)	대	73.17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204호)	대	91.08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301호)	대	73.17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302호)	대	73.17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303호)	대	73.17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304호)	대	91.08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305호)	대	91.08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306호)	대	91.08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307호)	대	91.08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308호)	대	91.08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309호)	대	91.08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310호)	대	91.08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311호)	대	91.08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312호)	대	91.08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401호)	대	73.17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402호)	대	73.17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403호)	대	73.17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404호)	대	91.08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405호)	대	91.08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406호)	대	91.08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407호)	대	91.08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408호)	대	91.08	9반

➤ 지번 조서(고한20리)

지번별	지목	지적(m^2)	비고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409호)	대	91.08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410호)	대	91.08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411호)	대	91.08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412호)	대	91.08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501호)	대	73.17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502호)	대	73.17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503호)	대	73.17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504호)	대	91.08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505호)	대	91.08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506호)	대	91.08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507호)	대	91.08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508호)	대	91.08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509호)	대	91.08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510호)	대	91.08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511호)	대	91.08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512호)	대	91.08	9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601호)	대	73.17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602호)	대	73.17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603호)	대	73.17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604호)	대	91.08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605호)	대	91.08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606호)	대	91.08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607호)	대	91.08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608호)	대	91.08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609호)	대	91.08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610호)	대	91.08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611호)	대	91.08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612호)	대	91.08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701호)	대	73.17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702호)	대	73.17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703호)	대	73.17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704호)	대	91.08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705호)	대	91.08	10반

➤ 지번 조서[고한20리(고한리 63-68지번 외 10개지번)]

지번별	지목	지적(m^2)	비고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706호)	대	91.08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707호)	대	91.08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708호)	대	91.08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709호)	대	91.08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710호)	대	91.08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711호)	대	91.08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712호)	대	91.08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801호)	대	73.17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802호)	대	73.17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803호)	대	73.17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804호)	대	91.08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805호)	대	91.08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806호)	대	91.08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807호)	대	91.08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808호)	대	91.08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809호)	대	91.08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810호)	대	91.08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811호)	대	91.08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812호)	대	91.08	10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901호)	대	73.17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902호)	대	73.17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903호)	대	73.17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904호)	대	91.08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905호)	대	91.08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906호)	대	91.08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907호)	대	91.08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908호)	대	91.08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909호)	대	91.08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910호)	대	91.08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911호)	대	91.08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912호)	대	91.08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001호)	대	73.17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002호)	대	73.17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003호)	대	73.17	11반

➤ 지번 조서(고한20리)

지번별	지목	지적(m^2)	비고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004호)	대	91.08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005호)	대	91.08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006호)	대	91.08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007호)	대	91.08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008호)	대	91.08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009호)	대	91.08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010호)	대	91.08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011호)	대	91.08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012호)	대	91.08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101호)	대	73.17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102호)	대	73.17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103호)	대	73.17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104호)	대	91.08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105호)	대	91.08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106호)	대	91.08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107호)	대	91.08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108호)	대	91.08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109호)	대	91.08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110호)	대	91.08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111호)	대	91.08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112호)	대	91.08	11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204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205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206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207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208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209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210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211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212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304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305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306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307호)	대	91.08	12반

➤ 지번 조서(고한20리)

지번별	지목	지적(m^2)	비고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308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309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310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311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312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404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405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406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407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408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409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410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411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412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509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510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511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512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609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610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611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612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709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710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711호)	대	91.08	12반
고한읍 고한리 63-68(행복주택 1712호)	대	91.08	12반

※ 고한읍 행복주택 지번 : 고한리 63-68, 63-39, 63-64, 63-65, 63-66, 63-67, 63-69, 63-71, 63-72, 63-73, 63-7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 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정선군청 행정과
- 전화 : 033-560-2236
- 팩스 : 033-560-2590
- 이메일 : kms4820@korea.kr

- 붙임 1. 의견서 제출서식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반운영규칙 일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공고 제2019-868호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8월 9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나. 전통시장의 인정(안 제6조~제10조)
- 다.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안 제11조~제14조)
- 라. 임시시장의 개설·신고(안 제15조~제18조)
- 마.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안 제19조~제23조)
- 바. 상인회 설립 및 등록(안 제24조~제31조)
- 사.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안 제32조~제34조)
- 아.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안 제35조~제4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26130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정선군청 경제과
- 전화 : 033-560-2358
- 팩스 : 033-560-259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정선군 관내 재래시장의 육성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를 따른다.
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 센터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를 따른다.
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시장구역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②군수는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 안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향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향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소방·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4. 전통시장안의 도로 : 가능한 경우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 전통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②군수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장 전통시장의 인정

제6조(전통시장의 기준 등)

①전통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

- 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 ②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전통시장구역의 설정기준)

- ①전통시장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②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 ③전통시장으로 고시한 후 전통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전통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 ①전통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 내지 마목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 ②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전통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4일 전까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전통시장 인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 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3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의2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12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군수는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를 따른다.

제14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4장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제16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법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임시시장의 신고취소) 군수는 임시시장 개설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등록한 경우
2. 임시시장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개설하기로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일 이상 계속 휴업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4.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5장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지원

제19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군수는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 내 공공시설물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운영)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농어민직영매장 신청 자격) 공설시장 또는 시장내 공공시설물에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정선군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임산물·축산물 및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22조(농어민직영매장의 사용료 등) 군수는 제19조에 의한 농어민이 공설시장 또는 시장내 공공시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 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 철회서에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군수 및 동의의 상대방에게 발송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의 철회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6장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제24조(상인회의 설립) ①시장·상권활성화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

②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인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자를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5조(상인회 정관 등) ①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②정관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상인회 등록 등) ①정부·강원도·정선군으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 ①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문 예정일 14일 전까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상인회명

2. 대표자

3. 소재지 및 시장명

4. 등록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관리 대장에 그 취소사항을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28조(예산의 지원) ①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

산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서류비치 등) ①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의 성명·주소록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보고 및 자료제출) ①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②상인회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2. 법 제25조 내지 제30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의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3. 법 제55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지원자금 사용내역
4. 법 제65조제7항 및 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사업 등에 대한 추진 실적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

제32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 ①군수는 법 제68조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34조(공설시장의 시장관리자)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31조에 의한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35조(시설물의 소유권) ①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수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군수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의한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 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단체·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가치가 있어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36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5년 단위로 1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3년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제37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정선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②군수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 ①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 법 제18조 및 영 제7조에 의해 공유재산 사용료 등을 다음 각 호의 감면율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 등의 80퍼센트
2. 주차장 :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탁료의 80퍼센트

제40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

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1조(인·허가 등의 일괄처리)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장 과태료 부과·징수

제42조(과태료 부과·징수)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43조(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5조제3항에 의한다.

제4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5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4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군수는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

제47조(지방세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 수납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인회는 이 조례의 기준에 의하여 인정 또는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